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84
----------	-----

2020. 3. 24.(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서동학 의원 등 13인
- 나. 발의일자: 2020년 3월 4일
- 다. 회부일자: 2020년 3월 5일
- 라. 상정일자: 2020년 3월 13일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서동학 의원)

가. 제안이유

- 학생의 교복 구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복 지원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 지원대상(안 제5조)
- 지원방법(안 제6조)
- 환수(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가. 주요내용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은 교복구매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중·고·특수학교 1학년 신입생과 전·편입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학생 교복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학교장의 책무로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 좋은 교복 공급 노력을 규정하여 교복 지원 정책 시행 의지와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에 중·고·특수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 또는 편입하는 학생을 교복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안 제6조에 교복구입비 지원 방법을 현물 지원으로 명시하여 교복 지원 사업의 시행 체계를 명료화하였으며,

- 안 제7조에 교복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교복 지원비 전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복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의무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전체적인 조문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 구매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교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 대상자는 충청북도 내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

으로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복 지원은 재학 중 1회로 제한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학교별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③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절차, 금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교육감은 제5조제1항의 교복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교복 지원비를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복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복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 지원은 2021학년도에 입학, 전입,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 **교육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학생의 교복 구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증진시켜나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학생의 교복 구매 지원에 필요한 비용

3. 관련조문

-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안 제6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자 충청북도 내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
 -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나. 추계 결과

연간 소요비용 추계		연도별 소요비용 추계(단위: 천원)					
산출기초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1. 교복비 지원	43,804,656	8,266,144	8,291,431	9,109,223	9,005,900	9,131,958	43,804,656
가. 교복비 지원	43,804,656	8,266,144	8,291,431	9,109,223	9,005,900	9,131,958	43,804,656

○ 산출근거

(단위:원,명)

구분	단가	학생수	금액	비고
2021년				
중1학년 신입생	309,663	13,677	4,235,260,851	
고1학년 신입생	309,663	12,860	3,982,266,180	
특수 중1학년 신입생	309,663	66	20,437,758	
특수 고1학년 신입생	309,663	91	28,179,333	
합계		26,694	8,266,144,122	
2022년				
중1학년 신입생	313,998	13,054	4,098,929,892	
고1학년 신입생	313,998	13,195	4,143,203,610	
특수 중1학년 신입생	313,998	66	20,723,868	
특수 고1학년 신입생	313,998	91	28,573,818	
합계		26,406	8,291,431,188	
2023년				
중1학년 신입생	318,393	13,796	4,392,549,828	
고1학년 신입생	318,393	14,657	4,666,686,201	
특수 중1학년 신입생	318,393	66	21,013,938	
특수 고1학년 신입생	318,393	91	28,973,763	
합계		28,610	9,109,223,730	
2024년				
중1학년 신입생	322,850	13,867	4,476,960,950	
고1학년 신입생	322,850	13,871	4,478,252,350	
특수 중1학년 신입생	322,850	66	21,308,100	
특수 고1학년 신입생	322,850	91	29,379,350	
합계		27,895	9,005,900,750	
2025년				
중1학년 신입생	327,369	13,867	4,539,625,923	
고1학년 신입생	327,369	13,871	4,540,935,399	
특수 중1학년 신입생	327,369	66	21,606,354	
특수 고1학년 신입생	327,369	91	29,790,579	
합계		27,895	9,131,958,255	

- 교복 학교주관구매 권고 상한 가격에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2019년 1.4%) 매년 1.4% 추정치 반영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 4년간 배치계획 참고(2025년은 전년도 준해서 편성)
- 특수학교 신입생(2021년~2025년)은 2019년 교육행정요람 참고(대상학생 미선정)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8,266,144	8,291,431	9,109,223	9,005,900	9,131,958	43,804,656	
세 출							
교복비지원	8,266,144	8,291,431	9,109,223	9,005,900	9,131,958	43,804,656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8,266,144	8,291,431	9,109,223	9,005,900	9,131,958	43,804,656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8,266,144	8,291,431	9,109,223	9,005,900	9,131,958	43,804,656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